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29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문진석 · 이건태 · 이정문
한정애 · 이연희 · 이재관
윤호중 · 복기왕 · 박성준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화물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불량으로 밝혀졌으나 현행 정기검사(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제도 하에서는 차량 내부 정비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닐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

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동차의 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중량 이상의 특수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또는 차량중량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② 제1항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해당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

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검사”를 “점검·검사”로 한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2(자동차의 점검) ①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u> <u>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교통</u> <u>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u> <u>기점검을 받아야 한다.</u> 1.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u>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u> <u>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중 국</u> <u>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u> <u>중량 이상의 특수자동차</u> 2.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u>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u> <u>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국토</u> <u>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u> <u>재량 또는 차량중량 이상의</u> <u>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u> ② <u>제1항의 자동차 소유자는</u> <u>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해당</u> <u>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u> <u>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u> <u>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u> <u>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u>

유자가 제1항에 따른 <u>검사</u>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생략)	----- --<u>점검·검사</u>-----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